KoreaFuture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과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인식 예비조사

KoreaFuture

성폭력과 젠더 폭력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관련 책임규명 방안 이해도에 대한 초기 조사

© 2023 한미래

디자인 및 데이터 그래픽 작업: whateyemade.com

Canada

본 보고서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후원으로 발간되었다.

koreafuture.org

한미래는 영국과 웨일스에 등록된 자선단체(1185332)이다.

감사의 말

본 보고서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후원과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한미래의 의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한미래는 본 보고서 제작을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과 Women's Initiatives for Gender Justice, 북한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대표님,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님, 그리고 Center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께 감사드린다.

목차

개요 5

정책 제안 7

관련 법 체계 8

제1장:성폭력 행위 목록 10

제2장:성폭력에 대한 인식 12

제3장: 책임규명과 정의구현 19

결론 24

부록 I. 방법론 25

부록 II. 심층 면담자 인구통계 27

부록 III. 설문조사 응답자 인구통계 28

미주 34

개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국제사회가 COI 설립 10주년 기념을 준비하고 있지만,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국제 범죄 가해자의 책임 규명은 여전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는 국제 사법 제도와 COI, 그리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COI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편견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기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보고서가 관련 있는 폭력의 정도를 부분적으로만 담아냈을 수도 있다"고 한다.[1]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생존자 중심적(Survivor-centred)인 성폭력 조사 표준안으로 등장한 무라드 코드(Murad Code)[2]와 헤이그 원칙(The Hague Principles)[3]에 이어서 북한 인권 분야에 특화된 트라우마 기반 접근(Trauma-informed approach)의 생존자 중심적인 성폭력 조사 기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조사관들이 기록 과정에 생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생존자가 구상하는 책임규명 및 정의구현 방식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생존자 발언 확대를 향한 한미래의 첫 발걸음이다.[4] 보고서 내에 쓰인 정보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에 사전에 연락 후 연구에 필수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다. 한미래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폭력 조사와 기소에 관련된 국제적인 지침과 기준을 살펴본 후,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선발된 10명의 설문조사 참가자들과 추가적으로 진행한 반구조화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미래의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 인터뷰를 젠더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내용과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밝혀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행위의 목록을 제시한다. 이 목록은 북한에서 어떠한 행위가 성폭력으로 인식되는지, 사람에 따라 성폭력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강간보다 많은 행위들이 성폭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초기 단계의 발견을 보여준다.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2015년 이후에 탈북한 50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사회 규범과 문화적 구조에 대한 초기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이 결과는 많은 경우 인권 침해와 국제 범죄는 젠더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차(intersectional) 분석을 적용해서 젠더화되어 있는 침해의 구조를 파악하면 왜 특정 사람들이 특정 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젠더와 상호작용하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 같이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변수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피해자가 이해하는 책임규명 방안과 그 절차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헤이그 원칙 중 "[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폭력에 대한] 권위적인 지침은 국제 범죄에 있어서의 성폭력을 충분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위협할 것"[4] 이라는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 성폭력을 둘러싼 법적 이해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결과가 추후의 인식 제고와 다양한 성폭력 및 인권 침해를 기록하려는 움직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책 제안

1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많은 생존자들은 성폭력의 구조적 동인으로서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과의 교차점을 포함하여 성폭력 및 그러한 폭력의 젠더화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거나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생존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한 폭력을 완전히 인식하고 보고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인권 침해 사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젠더 문제에 대한 공동체가 의식을 가지는 것은 생존자들이 기록활동을 넘어 책임규명 활동에 참여할 때 다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 공동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북한 상황에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시민 사회 단체, 재단 및 후원 단체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하여 생존자와 그 생존자가 속한 공동체에 기본적인 인권을 더 잘 알리기 위해 공동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2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모든 생존자들은 활용 가능한 책임규명이나 정의구현 방안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했다. 정의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은 생존자들이 활용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선택권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규명에 대한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은 국가, 다자간 기관 및 사법 행위자가 관련 공동체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생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정의에 대한 선호도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3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생존자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오랜 시간 간과되어온 북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기록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젠더-반응적 (gender-responsive), 생존자 중심 및 트라우마 기반의 기록활동은 범죄 기반 정보를 보존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가 되어 젠더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동일한 뜻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회의, 정책 및 외교 개입에서 북한의 젠더 정의를 다루는 등, 분쟁 관련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다루는 광범위한 의제 내에 북한이라는 맥락에서의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관련 법 체계

본 섹션에서는 북한의 국내 법적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성폭력과 관련된 북한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려 한다. 북한 법률상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10대 원칙')이 갖는 절대적인 국내적인 권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국제인권법에 구속됨을 밝힌다.

북한은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구제책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법과 실천 모두에서 보장된다]"[5] 고 말한 것과 다르게 한미래가 탈북여성 및 남성에게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의무, 특히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6]

북한의 국내 사법체계 상에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금지하는 원칙 체계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1) 10대원칙,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상위 원칙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의 10대 원칙이며, 다른 두 원칙은 차례대로 차등적 중요성을 가진다.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은 북한 내 모든 국내 정책들을 만들고 그 시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에 관련된 정책 역시 담당한다.[7]

• 10대 원칙

10대 원칙은 1974년에 제정되었으며, 북한의 실질적인 헌법으로서 기능한다. 해당 원칙은 북한 내에서 최상위 권위를 가지는 법령으로 간주되며, 10개의 개별 구성요인들은 모든 북한시민들이 가져야하는 모범적인 자세, 인식, 그리고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0대 원칙은 북한 국내 법의 설립과 적용 과정을 규정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가르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된다. 10대 원칙은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 법을 포함한 국내, 국제적 인권 기준을 위반 사유로서 기능하며, 이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 입법적인 접근이 아닌 정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헌법 제3조는 국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8]를 따르며 10대 원칙을 국내법과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헌법 내 성폭력 보호 조항은 집행 가능하거나 강제된 법적 권리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헌법은 명목상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5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그리고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제77조)"고 규정하고 있다.[9]

• 북한 형법

북한의 형법 체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다. 북한 형법 체계는 강간,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행위 강요,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성폭력으로 구분한다.[10] 이 중에서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항목만이 남성과 여성 양측을 가해자로서 성립될 수 있다 정의하고 있으며, 세 항목 모두 성행위를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의 전제 조건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성행위를 구성하는 추가적인 행위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수반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들은 삽입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강압적이며 동의를 얻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내 성범죄 인식의 제한적인 범위와 피해자 보호 수단의 부재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국제인권법

국제법은 북한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포함한다.[11] 북한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협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12]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CR)에 가입되어있다.[13] 북한은 1981년 ICCPR에 가입한 이후부터 해당 협약의 구속되며, 이 때문에 자국민들의 ICCPR 6조 생명권, 그리고 9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추가적으로 ICCPR는 3조 여성과 남성의 동일한 사회적 권리와 정치적 참여 권리를 보장하며, 4조는 법 아래의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ICCPR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지만 유엔 인권위는 가입국에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예방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인권위 일반논평 35항은 "[가입국에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내 폭력 등의 형태의 폭력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위 일반 논평 36항은 "미성년 및 성년 여성에게 자행되는 극심한 젠더 기반 폭력인 페미사이드는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서술했다. 추가적으로, ICCPR 7조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한다. 유엔 인권위는 국가기관 소속 공직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을 고문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14]

제1장:

성폭력 및 젠더 폭력 행위 목록

다음은 한미래가 북한이탈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심층면담,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NKPD)의 젠더 검토를 통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행위를 포함하는 목록이다. 일관성을 위해 이 설문조사에는 헤이그 원칙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했다. 각각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진 경험과 사회적 지위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래의 목록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기록하는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며, 추후에 확장될 여지가 있다. 개별 항목들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인식되는 정도의 경중을 시사하지 않는다. 제2장, “성폭력에 관한 인식”은 본 목록을 보완하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기반한 북한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1
원치 않는 나체 노출 / 성적인 행위에 노출

2
의학적 이유와 무관한 성적인 신체부위
(성기, 항문, 가슴, 처녀막 등) 검사

3
성적인 신체부위에 입맞춤, 핥기 등

4.
생식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형태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 강요, 혹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곁에 눕거나 앉기

5
강제임신

6
강제임신, 강제거세를 통한 번식 결정권 박탈

7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개인의 신체를 주제로 한 언어 폭력

8
성적 접근 거부에 대한 징벌

9
소셜미디어나 기타 온라인 매체 상에서 개인의 나체, 부분 나체, 아니면 성행위 상황을 담고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10
월경 관련 위생관리 행위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 행하는 생리현상 관련 행동을 공공장소나 타인 앞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1
정도나 깊이와 무관한 신체 부위 삽입행위

12
정도와 깊이와 무관한 물체 삽입행위

13
모욕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무례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원치 않는 다음과 같은 성행위 일정의 강요:

a) 성적인 음성, 언사, 몸짓을 강요
b) 휴대폰 등의 개인 통신장비의 무단검열, 조회
c) 성적 대상화나 성적 욕구 표출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의 시선 노출

제 2장:

성폭력에 대한 인식

면담한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사실 공개에 대한 장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1) 신체적 행위로서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 2) 피해자 비난 및 적극적 동의 여부, 그리고;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그 세 가지이다.

북한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에 성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면담자들에 따르면, 성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가족끼리도 편히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원을 거치며 주로 사전 예방에 관련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정보를 일부 습득하지만, 주로 유튜브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보도들을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5] 대한민국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보다 더 다양한 성폭력 관련 개념들을 접하게 되지만, 북한 사회통념상 일반화된 성관념이 여전히 내재되어 유지되고 있다.

한미래의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남성들에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성폭력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고르는 질문을 제시했다. 응답자는 해당되는 단어를 다중선택 할 수 있었다.

신체적 행위에 국한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아래의 보기 중 어떠한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성	여성	총	
22	23	45	강간
15	13	28	강제 성매매
14	13	27	강제임신
10	9	19	성추행
11	7	18	신체적 폭력
11	6	17	강제낙태
9	8	17	성희롱
7	7	14	디지털 성폭력
4	8	12	부부강간
6	5	11	그루밍
5	5	10	언어적 폭력
6	3	9	강제 불임
3	5	8	페미사이드
3	3	6	스토킹

‘성적인’ 행위에는 신체적 접촉이 필수적인가요?

위의 질문에 대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성폭력을 주로 신체적인 행동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50% 이상이 (여성 14명, 남성 12명) 성폭력의 성립에 있어서 신체 접촉이 필수적이라 답했으며, 응답자들의 25% 이상은 같은 질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22%의 응답자들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성폭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삽입과 같은 뚜렷한 신체적 요소가 존재해야만 성폭력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강간, 강제성매매, 강제임신, 성추행, 신체폭행, 강제낙태 등을 포함한다.

흥미롭게도 여성 면담자 5명 중 한 명만이 성폭력 및 젠더 폭력이 “강제 성폭행”[16]으로 국한된 개념이라고 인식했다. 최근 대한민국에 정착한 해당 여성 면담자 한명을 제외한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면담자들은 북한에서 거주하던 때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행위들을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대다수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인 언행 역시도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일종으로 인식했다.

남성 면담자들은 대체로 무엇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좁은 견해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의 대부분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이 질내 삽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례로 대다수의 남성 면담자들은 원치 않는 성적인 언행, 응시, 접촉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일종이라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동시에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남성들에게 적대적”이라고 답변했다.[17] 한 남성 면담자는 대한민국 정착이후 실수로 여자를 만지는 것이 성범죄로 인식된다 여겨서 조심한다고 답변했다.[18] 또 다른 남성 면담자는 2021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여자를 응시하는 것이 위험하다 여기게 되었으며 동성애자로 여겨지기 싫어서 남성과의 신체접촉에 조심스럽다 답변했다.[19]

가장 최근에 탈북한 남성 면담자의 응답은 더 나은 기록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젠더 정의를 지원하려면 비신체적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정보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에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여성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밝힌 이 남성 면담자[20]는 “[북한의 남녀 사이가 편하고, 여성들은 대한민국에서처럼 남자들이 실수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일을 크게 만들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남자를 속이는 여성도 많다. 북한의 여성인권 상황은 대한민국보다 심각한 것이 맞지만 남한에서처럼 ‘성희롱’ 문제가 있지는 않다]” 고 이야기했다.

적극적 동의 개념의 부재에 기반한 피해자 비난

면담자들의 답변에 비추어 보면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규범적인 관습이 북한의 직장과 가정에 만연해 성폭력이 하찮게 여겨지고 피해자가 "[부주의]"하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21]

면담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할 시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된다. 가장 최근에 탈북한 면담자들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인 위치나 재력과는 무관한 현상이라 증언했다.[22] 이는 북한의 사회통념상 강간 피해 여성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23] 외부문화와 변화하는 사회통념에 노출된 결과 혼전성교에 대해 더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북한이탈주민 역시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탄압을 경험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24] 하려 한다거나, "성적으로 문란"[25]하거나, "정신이상"[26] 상태인 것으로 인식된다.

설문 응답자들의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한미래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해당 상황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질문했다. 아래의 두 섹션은 시나리오별 응답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증언과 성폭력 조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유대감과 적극적 동의에 대한 혼동

면담자들은 지인, 친구 등의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대상으로부터 당한 강간은 동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로 인식한다고 말했다.[27] 강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50명 중 12명만이 부부강간을 성폭력으로 인식했다. 면담자들의 경우, 절반보다 적은 인원 (남성 1명, 여성 3명)[28]만이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내에서 성적 파트너 관계 내 강간의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그렇기에 성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로 인식되지 않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면담자는 그들이 북한에서 거주할 때 북한 내의 가정폭력이 큰 문제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강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와 ▲은 연인 사이이다. ▲는 원치않지만 ■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성폭력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은 설문 응답자들이 성적 파트너의 성행위 강요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확실히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이러한 반응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밀함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인 인식은 성폭력 신고와 기록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압적 환경에 대한 인식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강압적인 조건에서의 성적 행위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구금 상태에서와 같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이 억압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적극적 동의가 불가능하다.

한미래가 북한 내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NKPD)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은 강압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조사팀은 NKPD에 기록된 223건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사례 중 인터뷰 대상자 대다수가 강압적인 환경에서 발생한 강제낙태, 강제적인 자궁검사 (몸수색), 성적 학대 위협, 강간 등의 특정 행위를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40% 이상이 공직자가 강압적인 성행위 후 추가 '혜택'이나 '특권'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동의한 성행위로 인지했다. 대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했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성행위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감자가 구금시설 안에서 계호에게 성상납을 한 후 면회 기회와 노동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성폭력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면담자 전원과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 (50명 중 41명)는 남자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면담자의 대다수는 성행위를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이성애적 폭력으로 이해했으며,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신체적으로 압도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는 면담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는 남성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며 피해자가 될 수도 없다는 믿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면담자들에게 남성들이 강간 등의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를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면담자들은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유약하거나 심약해서 "열등한"[35]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추가적으로, 모든 면담자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여성으로 국한된다고 인식했다.

면담자 중 한 명은 "여자 한 명 [감당]하지 못한"[36] 사실 때문에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 다른 면담자는 성폭력 피해 남성들을 "여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니 모자란 사람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인정 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37] 이러한 시각은 북한 문화 내에서 보편화 되어왔으며, 남성 면담자들 역시도 비슷한 사회통념을 가지고 있었다. 한 남성[38] 면담자는 남자가 여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수 없다 생각했으며, 여성 상관일지라도 남성 부하를 성폭행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다.

"[남자가 추행당하거나 강간 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짓을 하겠는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성적으로 문란한 나이먹은 여성이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도 젊은 남성과 기혼여성 양측이 원해서 발생했을 것이다.]"

모든 면담자들은 남성이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할 수 없다 생각했으며, 만약 발생한다 해도 해당 경우를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동성애의 일종으로 인식했다. 한 면담자[39]는 북한에서 동성애는 부패한 자본주의 문화의 결과물로 지칭될 때만 이야기 된다고 밝혔다. 면담자 두 명은 동성애 행위를 남성 대상 강간으로 인식했으며, 북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다 생각했다.[40] 최근 탈북한 면담자 한 명은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자가 다른 남자를 어떻게 성폭행해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긴 하나요? 범죄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며, (북한에는) 동성애자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어째서 남자와 그런 짓을 하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어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만연한 동성애 혐오, 동성애와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을 동일시하는 인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차별이 성폭력 피해자인 남성이 자신의 경험을 인권조사관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면담자의 70%가 남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성폭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은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내에서도 계속되어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은 북한에서는 남성 대상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해 인권조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3장:

책임규명과 정의구현

본 섹션은 대한민국 내 북한이탈주민 공동체가 성폭력에 대한 책임규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책임규명과 정의구현 방안에 대한 설문을 통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공동체는 국내외 여러 책임규명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 관련 정보를 보급한다면 유익할 것이다.

북한 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위한 책임규명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은 북한 내 사법적 개혁이 책임규명 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대략 80%은 (50명 중 39명) 가해자들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피해자 보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대답했다. 모든 면담자들은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더 높은 형벌, 더욱 적극적인 관련 범죄 기소 활동 등의 형법 개정이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면담자들은 북한에서 노동당이 성폭력 관련 법을 집행하여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이 없음을 고려할 때, 그와 관련한 사법 개혁과 적극적인 기소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표현했다. 면담자들은[42]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유일한 행위인 강간은 이른바 '비사회주의적', 그리고 반당적 범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집행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한 면담자는 노동당이 당의 선전선동과 모순되는 북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자 성폭력 관련 범죄 예방 및 기소를 억압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면담자들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부패가 성폭력을 범죄화하는 법의 집행을 저해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정치적 우선 순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으로 강력하거나 부유한 가정의 피해자만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금전적 뇌물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떤 쪽이 관련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45] 한 면담자는 피해자들은 정의구현을 위해 사법 체계를 믿기보단 사적제재를 택해서 가해자를 폭행하곤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법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46]

한 면담자[47]는 북한의 문화적 규범과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법적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세 명의 면담자[48]는 성교육의 부재가 북한 내 성폭력 성행에 일부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면담자들은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구현 노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면담자 본인들의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 성범죄 기소 절차에 대한 배경지식보다는 대한민국 내 성범죄 보도에 기인한 시각으로 보인다.

아래 보기 중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 있는 책임 규명 방안이 있다면 골라주세요.

유엔
✓✓✓✓✓✓✓✓✓✓✓✓✓✓✓✓✓✓✓✓✓✓✓✓✓✓✓✓ 26

국제형사재판소
✓✓✓✓✓✓✓✓✓✓✓✓✓✓✓✓✓✓✓✓✓✓✓✓✓ 23

대한민국 국내법정
✓✓✓✓✓✓✓✓✓✓✓✓✓✓✓ 15

국제사법재판소
✓✓✓✓✓✓✓✓✓✓✓ 11

진실 위원회
✓✓✓✓✓✓✓✓ 8

마그니츠키 인권 제제 관련 법
✓ 1

국제 임시재판소
✓ 1

보편적 관할권
✓ 1

설문조사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내에서 활용가능한 일부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심층면담 결과는 책임규명 방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거의 없음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설문 응답자들은 북한의 암시장에서 유엔 공급 구호물자나 약품을 접하면서 국제기구의 권위를 체감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49] 지나가는 대화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0] 한 면담자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을 이해한다 주장했으나, 이어서 불법적으로 들여온 제2차세계대전에 관한 외국 영화에서 해당 기관들에 대해 언급하여 알게 되었다 말함으로써 두 재판소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여줬다. [51]

북한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들의 증언을 유엔과 국제 사회에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설문 응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이해도와는 별개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믿었다. 60%가 넘는 설문 응답자들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경험에 관한 증언을 국제 활동가들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책임규명 활동에서 독립된 인권단체의 역할이 가장 크다 생각했으며, 피해자들의 역할이 그 다음으로 크다 응답했다. 이는 인권단체와 기존의 생존자 주도 단체 그리고 북한 디아스포라가 보다 철저하게 협력하여 생존자들이 밝힌 요구 사항과 관점을 기록활동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생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북한에서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책임 규명에 대한 운동을 누가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개 답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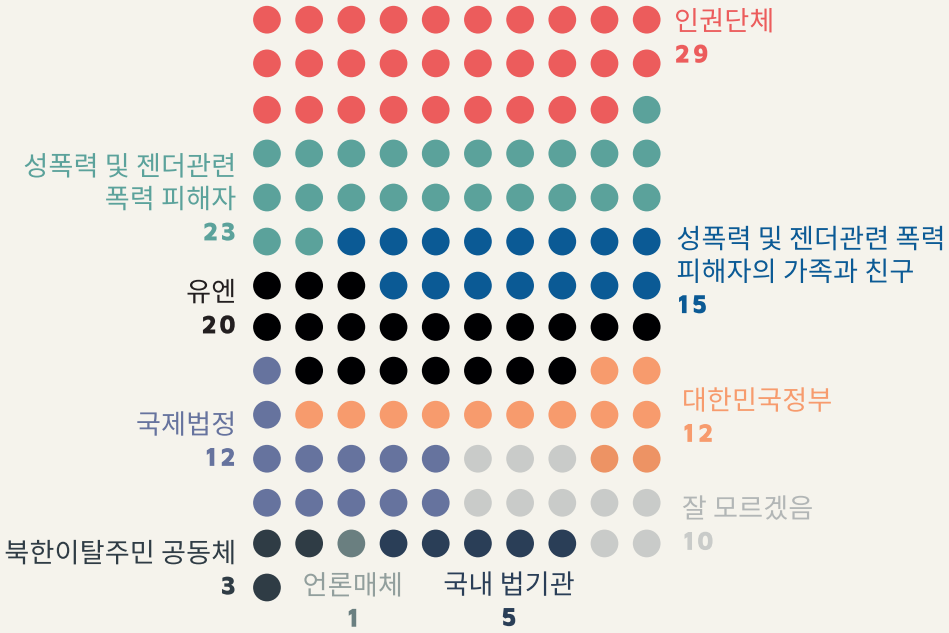

결론

본 보고서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탈북한 북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성폭력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은 절대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으며 추후 연구의 확장에 따라 추가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적극적 동의 개념의 부재와 같은 북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이는 예비 조사의 단계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한미래의 이해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한미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향후 기록활동을 지원하고, 기록활동 및 정의구현에 대한 생존자 주도의 접근 방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미래는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관련 폭력 피해자 중심 인권조사 및 책임규명 노력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침서의 구상을 위해 피해자들, 핵심 이해관계자, 그리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미래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법 절차 등 보다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생존자의 경험을 이러한 대화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할 것이다.

부록I.

방법론

사회적 낙인이나 수치심이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이 본인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제한하고, 그에 따라 관련 인권조사 및 책임규명 활동을 제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한미래는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인식 설문조사와 2015년 이후에 탈북한 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5명의 북한이탈주민 남성을 대상으로 대면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대상자들은 한미래 북한이탈주민 여성 리더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 186명과 한미래의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NKPD)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260명을 등을 포함하는 내부 북한이탈주민 연락망 내에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질문들은 1) 북한 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책임규명 활동을 제한하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내의 사회적 및 문화적 인식, 2)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성폭력 책임규명 및 정의구현 방안, 그리고 3) 북한 출신 개인이 성폭력 관련 담론에 대해 갖는 인식, 이 세 가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한미래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에서 사용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용어 및 개념은 헤이그 원칙, 국제인권연맹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용어사전 등 다양한 출처에서 차용되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화된 표현으로 정리하여 인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의 주요 목적은 1)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성폭력의 정의, 관련 지식, 인식 구조 파악
2)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정의구현 및 책임규명 방안 형태의 파악이다. 모든 분석 절차는 설문, 면담 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하여 진행되었다. 한미래는 면담자들과의 교류과정과 설문 응답 결과 분석 과정에서 도덕적, 보안 모범사례에 기반한 접근법을 채택했다.

부록 II.

심층 면담자 인구통계

고유식별번호	젠더	연령대	탈북년도	대한민국 입국연도	북한 내 거주지역
A-1	여	30대	비공개	비공개	함경북도
A-2	여	30대	2017	2017	함경북도
A-3	여	40대	2017	2017	량강도
A-4	여	30대	2016	2017	량강도
A-5	여	20대	2019	2020	함경북도
A-6	남	60대	2019	2019	량강도
A-7	남	30대	2019	2019	량강도
A-8	남	20대	비공개	2021	강원도
A-9	남	비공개			
A-10	남	40대	2019	2019	량강도

부록III.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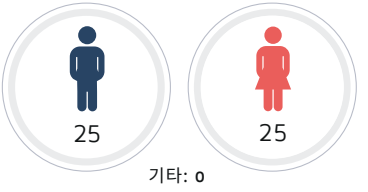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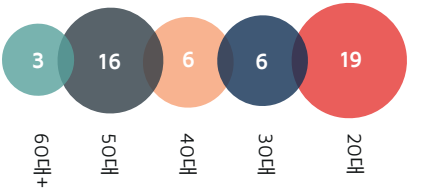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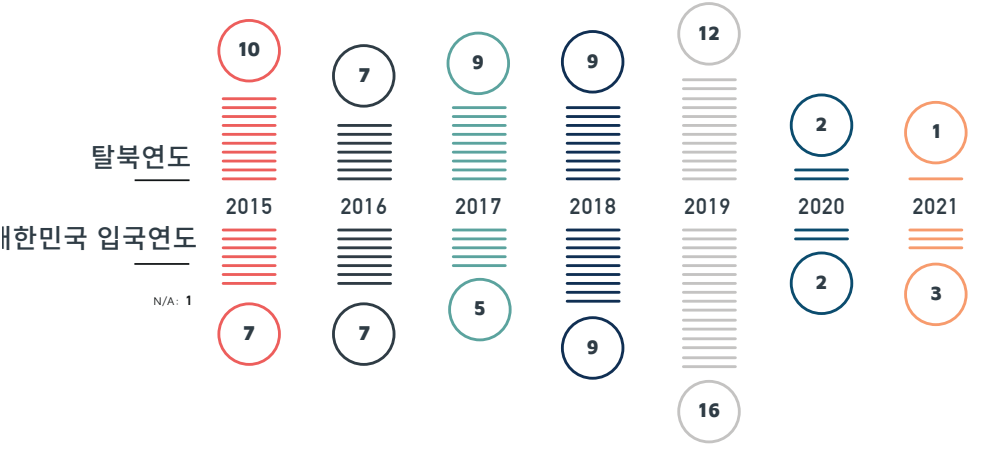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북에서의 거주지역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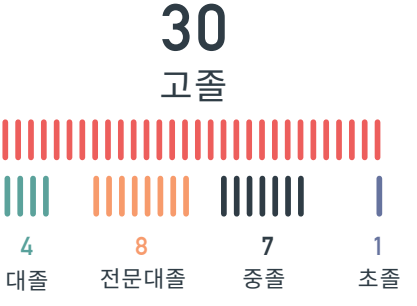

북한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북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가요?

북한 내 직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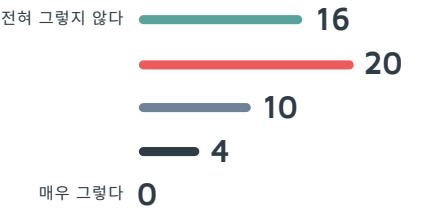

'성적인' 행위에는 신체적 접촉이 필수적인가요?

북한에서 남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얼마나 빈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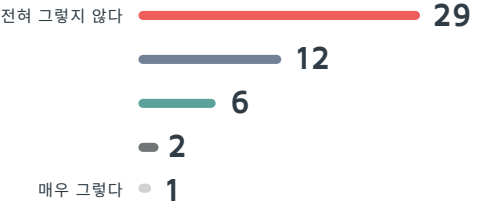

북한에서 아래의 보기 중 누가 성폭력 피해를 가장 흔히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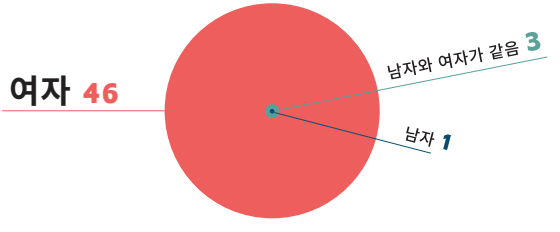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나요?

35 가끔 받음

7 전혀 받지 않음

4 항상 받음 4 잘 모르겠음

<<■가 ▲에게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 승진을 제시하였다. ▲는 거절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성폭력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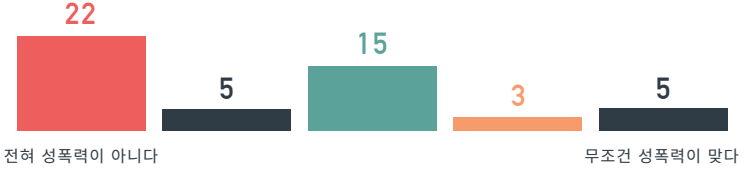

북한 내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여자와 남자에게 생기는 편견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대우를 받나요?

전 질문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경우 북한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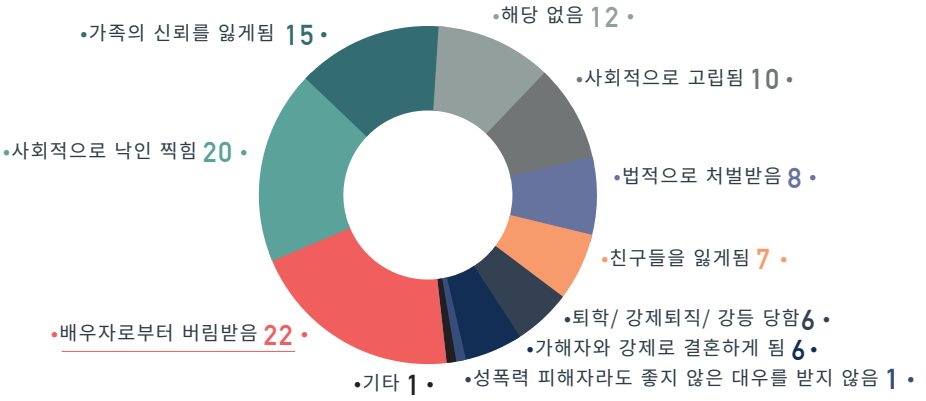

북한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제 법정에서 법적 조치를 추구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보기 중 북한에서 들어본 용어를 모두 골라주세요.

아래의 보기 중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아래의 보기 중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어본 용어를 모두 골라주세요.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 (201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p. 8). 2022년2월7일 접속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commission-inquiryon-h-rin-dprk

[2] 무라드 코드 프로젝트 (2022). 무라드 코드. 2022년2월7일 접속,rom https://www.muradcode.com/

[3] 젠더 정의를 위한 여성의 이니셔티브 (Women's Initiatives for Gender Justice) (2015). 헤이그 원칙. https://4genderjustice.org/ftp-files/publications/The-Hague-Principles-on-Sexual-Violence.pdf

[4] 젠더 정의를 위한 여성의 이니셔티브 (Women's Initiatives for Gender Justice) (2015). 헤이그 원칙 (62쪽), https://4genderjustice.org/ftp-files/publications/The-Hague-Principles-on-Sexual-Violence.pdf.

[5] 유엔, 당사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차기 정기보고서 점검 (CEDAW/C/PRK/2-4), 2016.

[6] 한미래 (2022),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 2022년 2월 7일 접속, https://nkpd.io

[7] 조선로동당은 고위 간부들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며, 법집행 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 내 근무하는 중급 및 하부 당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일일 감시 및 보고 체계를 운용한다. 이러한 활동은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인 김정은 지시하에 이뤄진다.

[8]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북한 내 종교,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실태 조사, 2022년 7월, https://www.uscirf.gov/sites/default/files/2022-07/2022%20North%20Korea%20Report.pdf: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북한 시민들이 내적, 외적 모든 측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1974년에 김일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표되었으며, 사상의 핵심원칙인 10대 원칙 역시도 동일 연도에 발표되었다. 현재 이름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011년에 김정일의 사망 기점으로 채택되었다."

[9] 북한 측은 다음과 같은 추가 법안들 역시 자국 내 성평등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남녀평등권법, 녀성권리보장법(2015년 최종개정), 로동보호법(2015 개정), 가정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2009), 293조, 294조, 295조, 2022년 2월 7일 접속, https://www.hrnk.org/uploads/pdfs/The%20Criminal%20Law%20of%20the%20Democratic%20Republic%20of%20Korea_2009_%20(1).pdf

[11] 유엔가입국인 북한은 유엔헌장과 국제인권선언이 수호하는 국제 관습법상 인권 증진 및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본 보고서는 국제 형법이 아닌 국제 인권법상 북한이 가지는 국가적 의무를 다룬다.

[1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12월 16일에 발의, 1976년 3월 23일부로 적용) 999 UNTS 171(ICCPR); 북한은 1981년 9월 14일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

[1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CR) (1966년 12월 16일 채택, 1976년 1월 3일 시행) 993 UNTS 3 (ICESCR); 북한은 1981년 9월 14일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ICESCR의 근본적 인권에 수호 조항에 따라 북한은 자국 내 여성 및 남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북한 측이 ICESCR이 요구하는 국가의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14] 유엔 자유권 위원회(HRC),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의견(CCPR 일반논평 28조 3항, 남성 및 여성 인권상 평등, 2000년 3월 29일, CCPR/C/23/Rev.1/Add.10, https://www.refworld.org/docid/45139c9b4.html.

[15] A-1, A-2, A-6, A-9

[16] A-5

[17] A-7, A-8, A-9, A-10

[18] A-7

[19] A-8

[20] A-9

[21] A-3, A-6, A-10

[22] A-8, A-9

[23] A-1, A-2, A-3, A-4, A-5, A-7, A-8, A-9, A-10

[24] A-9

[25] A-3, A-6

[26] A-6, A-7, A-8, A-9, A-10

[27] A-5, A-10

[28] A-1, A-2, A-4, A-10

[29] 한미래,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 2023년 2월 5일 접속, https://nkpd.io

[30] A-9, A-10

[31] 면담자들은 북한 경제 내에서 향상된 여성의 입지에도 불구하고도 북한 사회 내에서는 남성들이 여전히 주도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밝혔다: A-3, A-6, A-7, A-9

[32] 20-40살 사이의 면담자들은 젊은 세대 내에서는 남녀간의 권력 간극이 감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적 영역 내에서 남성들이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4, A-9

[33] A-1, A-2, A-3, A-5, A-7, A-8, A-9, A-10

[34] Ibid.

[35] A-1, A-2, A-3, A-5, A-7, A-8, A-9, A-10

[36] A-5

[37] A-3

[38] A-9

[39] A-6

[40] A-8, A-9

[41] A-9

[42] A-4, A-6, A-10

[43] A-3

[44] A-1, A-2, A-3, A-5, A-6, A-7, A-8, A-9, A-10

[45] A-1, A-3, A-5, A-7, A-8, A-10

[46] A-7

[47] A-4

[48] A-2, A-6, A-7

[49] A-2

[50] A-2, A-4

[51] A-3